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2. 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35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11. 15.(금)

라. 회부일자 : 2019. 11. 15.(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감 증 조성액 기 금 명 조성액 @ **e**=**d**-**a** 수입(b) 지출ⓒ (d=a+b-c)중소기업 육성기금 2,244,360 3,815,347 4,801,000 1,258,707 △985,653

(단위: 천원)

-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 융자대상자 선정에 내실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등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가. 기금 개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구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음.

- 1) 재원조성 :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정기 상환금 및 이자 등
- 2) 지원기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한도액 2억원 이내, 기업운전자금
- 3) **지원대상** : 제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 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나. 2020년도 자금운용 계획

(표1)2020년도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 계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항 목	지 출 액	전년도지출액
합 계	6,059,707	5,807,605	계	6,059,707	5,807605
융자금회수	3,735,337	3,281,978	비융자성사업비	1,000	120,700
예치금회수	2,244,360	2,445,272	융자성사업비	4,800,000	4,000,000
이자수입	80,010	80,355	예치금	1,258,707	1,686,905

2019년도 수입액은 58억 760만원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융자금회수금액이 4억 5,335만원 증가하여 60억 5,907만원이며 융자성사업비를 전년도 40억에서 48억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임.

○ 그간 지원 실적

(冊2)	지원	시전
~~~	- V   11-1	

(단위: 백만원)

\——/ I—	_			(단기 · 기단단/		
내역	신 청		지 원		~ 11 =	
구분	업체수	급액	업체	금액	경쟁률	비고
계			783	75,899	-	
1995년~2016년	-	-	660	64,544	-	'16년 대출금리 인하 (2.8% ⇒ 1.8%)
2017년	176	16,092	41	3,725	4.3 : 1	
2018년	223	21,365	44	4,160	5.0 : 1	대출금리 1.8%
2019년 10월	148	13,925	38	3,470	-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783개소이며 2017년도 41개소, 2018년 44개소, 2019년 10월까지는 38개소임.

#### 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 (표3)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 (단위: 천원) 예치 및 예탁액 구 분 예치(탁)처 비고 2018년도말 2019년도말 2020년도말 증감 현재액 현재액 현재액 예치금 △985.653 우리은행 2,961,857 2.244.360 1.258.707

기금의 예치 및 예탁액은 2018년도말 현재액 29억 6,185만원이었고 2019년 도말 현재액은 7억 감소한 22억 4,4356만원이며 2020년도말 현재액은 12억 5,870만원임.

#### 라. 검토 결과

본 기금은 2019년도말 현재액은 2,244,360천 원임.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액은 60억 597만 원이며, 이중 융자성사업비로 48억원은 48개소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한도액 2억원 이내, 기업운전자금으로 융자 계획임.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5,870만 원으로 예상됨.

2017년에 융자성사업비를 37억에서 2018년도는 42억원 2019년도에는 48억원으로 기업에 대한 융자성사업비 확대 지원하고 지원혜택이 보다 많은 기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근 5년 이내 지원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융자금 미상환 기업은 없어 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2016년부터 출자를 5회 시작한 'G밸리 기업 투자펀드'에 투자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관련 법령 1부.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9.22.] [법률 제14685호, 2017.3.21., 일부개정]

####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 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70호, 2016.7.18.,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6.7.18.>
-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상환 원리금중 금천구 이체 기금
-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 4.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신설 2016.7.18.>
- 5. 그 밖의 수익금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7.18.>]
-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2. 금융기관의 협력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 2011.10.27.>
- 3.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신설 2016.7.18.>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6.7.18.>]
-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7.18.>